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869번
- 제안자 : 이동현 의원 외 9명
- 제안일 : 2019년 8월 7일
-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본 조례에 근거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이고 다양화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중 청소년의회에서 선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함(안 제46조제3항제2호).
-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의 뜻을 더 명확히 함(안 제47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19.8.19.~2019.8.26)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이하 '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에서 모두 위촉하던 4명의 어린이·청소년 위원을 참여위원회 2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 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안 제46조제4항), 소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이 위촉하던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어린이 · 청소년 <u>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 ·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 · 청소년</u>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어린이 · 청소년 <u>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장, 부의장</u>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u>위촉</u> 한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u>선임</u> 한다.

- 현행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중요 정책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는 곳으로, 2년을 임기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자, 공개모집에서 추첨된 자, 의회의 추천자, 담당부서의 장(평생교육국장)과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 4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개요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5조, 제46조
- 목적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 및 권익증진
- 주요기능
 -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제반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20명 이내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청소년의회는 만 13세부터 19세 청소년 중 기관의 추천을 받아 100명을 1년 1회 선발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만9세부터 24세 청소년 70여명을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청소년의회 운영 개요

- 구성 : 만 13~19세 청소년 100명(기관추천 선발)
 - 의장단(의장1, 부의장2) : 청소년의회 활동 총괄
 - 상임위원회(4개) : 청소년의원들이 직접 선정한 이슈 중심 4개 상임위 구성
 - 활동조력자(16명) : 청소년의회 활동 지원(참여기구 활동 경험자 우선 선발)
- ※ 2016~2018년 : 제1대~제3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원/임기 : 70명 내외 / 임기 1년(기간 2019.3.~2020.2.)
- 신청자격 : 만 9세~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 선발방법 : 공개모집 원칙, 기관(장애인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탈북, 다문화)의 추천병행
- 구성비율 : 소수청소년 10%내외, 1개 자치구 3명 내외, 연임자 20% 내외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청소년
3. 시민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의 담당부서의 장

(이하 생략)

- 본 위원회의 위원 중 어린이·청소년 위원 4명 모두 참여위원회에서 위촉하던 것을 참여위원회 위원과 청소년의회의 의장·부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입장에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참여에 다양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청소년의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위원 변경 예시 〉

		현행		개정안	
소계		20명		20명	
민 간 위 원	단체추천	13명	7명	13명	7명
	일반시민		6명		6명
시 의 원		2명		2명	
청소년위원	참여위원회	4명		2명	
	청소년의회	0명		2명	
당 연 직		1명		1명	

- 본 조례는 제정(2012년) 시 본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구성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본 위원회와 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청소년의회는 시장방침에 의해 2016년(시장방침, 2017년 운영 근거를 마련)부터 운영하여 왔음.
- 서울시의 제도 중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는 ‘청소년 특별회의(서울 지역)’,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주민참여예산(공모)’ 등이 있으나,
형식적·단편적 운영으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연속성이 적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유사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참여 청소년이 매우 한정적으로, 일부 청소년이 여러 제도에 중복참여 중이며, 참여 청소년 간 교류도 적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¹⁾.
-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에 적극적·능동적·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개선, 청소년 참여 제도 및 기구에 대한 인지율 향상, 청소년 정책의 수립·평가에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는 등 참여의 질 향상 및 청소년 참여 제도 실효성 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 다만, 특정직의 사람을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청소년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청소년인권에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또는 청소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이해숙, 이영주, 2019,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참여 활성화 추진전략,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270호 2019.2.25.

- 또한, 청소년의회²⁾는 시장이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참여위원회³⁾는 그 설치 및 운영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기능, 지원⁴⁾ 등을 살펴 보건데 서울시의 사무로 보이나, 평생교육국은 두 위원회 모두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m^2)		현원 (정원)	설치일	운영법인
		부지	건물			
시립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33	252	252	14 (14)	1999. 5.26	(사)한국청소년연맹

- 민간위탁 관련 조례⁵⁾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정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서울시의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로 보여지는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인지 여부 및 의회의 동의 없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3)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제50조(설치)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제52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업무〉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나. 위탁내용

○ 위탁업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연구 및 조사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지원 및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관리
- 청소년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 · 운영(시설물, 장비 포함)
-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동의일(의결일) : 2016년12월16일 (제271회 정례회)

- 평생교육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사무를 위탁하는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유사사례가 지속·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권한의 이관방식

- 민간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위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 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
- 대행 :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그 업무의 수행 만을 맡기는 것(「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대행 및 대리))

- 안 제47조제4항은 소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내부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선임’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임.
- 위촉과 선임은 각종 법령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정의 규정은 없고, 사전적으로 ‘위촉(委囑)’은 ‘부탁하여 맡게 함’을 뜻하여 ‘맡김’으로 순화할 수 있으며, 각종 용례를 살펴보면, 외부 기관이나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길 때에는 주로 ‘위촉’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며, ‘선임(選任)’은 ‘여러 사람 가운데 골라 맡김’으로 ‘뽑음’과 ‘임명함’ 등으로 순화할 수 있고, ‘내부 인사 또는 특정한 요건이나 자격, 능력 등이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맡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 위촉(委囑)의 용례

- 정부로부터 위촉을 받아 환경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 학교 재단 측은 죄 씨를 객원 교수로 위촉하였다.
- 폐수 정화 문제를 대학 연구소에 위촉해 해결하도록 하였다.

※ 선임(選任)의 용례

- 검사 선임/총장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다.
- 이사회는 김 부장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 다른 조례에서도 위원회의 위원에게 어떠한 일이나 직무를 맡길 때 ‘선임’을 사용하고 있고, 위촉과 선임은 유사하나 의미상 차이가 크지 않으며, 본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중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뽑는 것으로 위촉보다는 선임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표준국어대사전, 한국기초사전,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개선’ 중 다음은 말, ‘공공언어 개선’ 중 규정용례

-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소위원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이하 생략)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이하 생략)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위원장의 직무)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략)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22조(구성)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략)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③ 위원장은 (중략)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위원을 선임한다.
-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략)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소위원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